



염전 → 자동차로

'미 강제 노동 금지' 제조업 전반에 영향

대미 수출기업 위기 관리 전략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국제통상팀·
DLA Piper LLP(US)] (12p)

[초점]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안
시행 ...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품목 및 인증서 확대 (4p)

[위클리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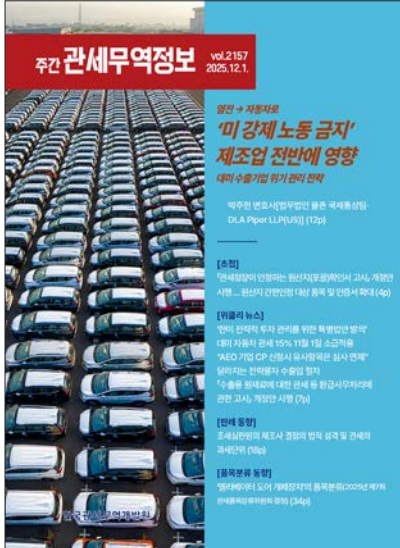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대미 자동차 관세 15% 11월 1일 소급적용
“AEO 기업 CP 신청시 유사항목은 심사 면제”
달라지는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7p)

[판례 동향]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 및 관세의
과세단위 (18p)

[품목분류 동향]

‘엘리베이터 도어 개폐장치’의 품목분류(202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34p)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5년 12월 1일(통권 제2157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관세청,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 ...
K-푸드 수출기업 FTA 활용성 제고

판례동향

- 18** 관세판례해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 및
관세의 과세단위

07 Weekly News

품목분류동향

- 34** 품목분류해설
엘리베이터 도어 개폐장치의 품목분류
- 41** 상식 밖의 상품학
미래 자원 폐배터리

전문가칼럼

- 12** 박주현의 워싱턴 통신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
DLA Piper LLP(US), Washington DC
Office 파트너 변호사
“염전만 문제 아니다” ‘미 강제노동 금지’ 제조업
전반에 영향

최신개정법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
(www.kctdi.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세행정실무해설

- 16** 질의응답사례
전자액자의 HS Code
-

관세청,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 … K-푸드 수출기업 FTA 활용성 제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안 시행 … 도축검사증명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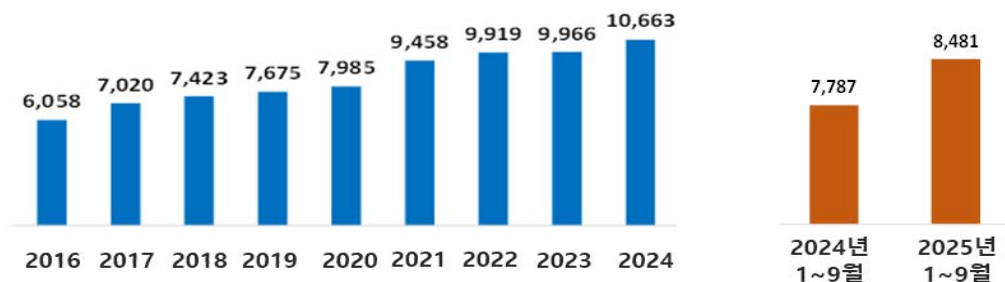
관세청이 K-푸드 수출 증가세에 맞춰 원산지증명 절차를 간소화했다.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식품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품목과 인증서가 늘어나 수출기업은 보다 손쉽게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K-푸드의 성장세는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한국 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84억 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8년 연속 수출이 증가했고, 지난해 수출액 역시 전년 대비 7.0% 증가한 106억 6,3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역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최근 10년간 K-푸드의 수출액 추이 ●

(단위 : 100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 1~9.	2025. 1~9.
금액	5,653	6,058	7,020	7,423	7,675	7,985	9,458	9,919	9,966	10,663	7,787	8,481
증감률	△4.5	7.2	15.9	5.7	3.4	4.0	18.5	4.9	0.5	7.0	6.5	8.9



출처 : 관세청

이 같은 수출 호조에 맞춰 관세청은 복잡한 원산지증명 절차를 줄이고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기업이 다수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해 고시할 수 있다.

■ 축산물·수산물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확대 ... 도축검사증명서 추가

이번 고시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생산했지만, 원산지 입증자료를 구비하기 힘들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도축검사증명서가 간편인정 인증서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됐다. 그간 축산물 간편인정 서류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급하는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꿀) 등급 판정확인서 4종이었다. 도축검사증명제도는 동물위생시험소가 발급하며 가축 종류, 이력번호, 도축일자 등 핵심 정보가 기재된다. 다만, 기존 축산물(소) 등급 판정서에는 제10210.20호(염장·염수장·건조·훈제)가 포함됐지만, 도축검사증명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물 중에서는 기존 원산지증명 인증서류인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에 활넙치가 추가됐고,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에 활넙치·붕장어·방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방어, 넙치, 붕장어 등은 앞으로 단일 인증서만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다.

●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는 인증서류 및 품목 ●

구분	원산지증빙 인증서류	간편인정 선정품명	HS Code(6단위)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쇠고기 (Meat of bovine animals)	제0201.10/20/30호(신선·냉장) 제0202.10/20/30호(냉동) 제0206.10-29호(설육 신선·냉장, 냉동)
		돼지고기 (Meat of swine)	제0203.11/12/19호(신선, 냉장) 제0203.21/22/29호(냉동) 제0206.30/49호(설육 신선·냉장, 냉동)
	수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증	활넙치 (Bastard halibut/Paralichthys olivaceus)	제0301.99호
		활넙치 (Bastard halibut/Paralichthys olivaceus)	제0301.99호
수산물	수산물 이력추적 관리 등록증	붕장어 (Conger eel)	제0301.99호(활어) 제0302.89호(신선·냉장) 제0303.89호(냉동)
		방어 (Yellow tail)	제0301.99호(활어) 제0302.89호(신선·냉장) 제0303.89호(냉동)
	재활용 공산품	재활용 황산망가니즈 (Recycled Manganese sulfate)	제2833.29호
		재활용 황산코발트 (Recycled Cobalt sulfate)	제2833.29호
		재활용 탄산리튬 (Recycled Lithium carbonate)	제2836.91호

구분	원산지증빙 인증서류	간편인정 선정품명	HS Code(6단위)
재활용 공산품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	재활용 수산화리튬 (Recycled Lithium hydroxide)	제2825.20호
		재활용 고밀도 폴리에틸렌 (Recycled high density polyethylene)	제3901.20호
		재활용 폴리프로필렌 (Recycled polypropylene)	제3902.10호

출처 : 관세청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새롭게 지정된 품목의 경우 관계기관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절차가 크게 단축된다. 이는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중소 식품기업의 실무 부담을 줄이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증빙서류 예시 ●

일반 수출품목(8종)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1종)
- 원산지소명서 및 - 원산지입증자료[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원산지확인서 등 7종]	도축검사증명서

출처 : 관세청

또한 원재료 공급 단계에서도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간편인정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의 생산기업은 완제품 가공·수출기업에 원산지확인서류 대신 지정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공급망 전 단계에서의 증빙 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재활용 품목까지 확대 ... FTA 활용 기반 강화

이번 개정에는 재활용 산업 지원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재활용 황산코발트, 폴리프로필렌 등 6개 우수재활용(GR) 인증 제품이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되면서 GR 인증서만으로도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재활용 공산품의 FTA 활용 기반이 강화되고 관련 산업의 수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 품목은 농산물 1,030개, 수산물 101개, 축산물 8개, 식품류 39개, 지역특산품 48개, 재활용 공산품 31개로 확대됐다.

관세청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가 수출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 조치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에 대한 간편인정 확대를 지속 검토해 FTA 활용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 장기 사용 원재료도 '관세 환급 허용'

관세청은 석유화학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이 허용된다.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모든 원재료를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공정의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능해 관세환급 신청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 김성은 기자 |

국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로 대미 자동차 관세 15% 11월 1일 소급적용 요건 갖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대미 자동차·부품 관세 15% 인하의 요건을 갖추게 됐다. 지난 11월 14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대미 투자 방식은 미국 투자위원회가 사업 후보를 제안하는 방식과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 투자 후보 사업 발굴을 하는 두 가지 방식이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는 우선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률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 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협의하며,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을 집행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직접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산업부 장관이 대미 협의 후 최종 사업이 선정되면 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자금 집행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법안은 투자과정에서 각 위원회와 산업부 장관 등이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법안에 따라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집행, ▲외환시장의 불안 야기가 예상될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 조정, ▲상업적 합리성 있는 투자 사업을 미국에 추천, ▲국내법과 상충 여부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측에 제시, ▲사업의 벤더 및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는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및 에너지 공급 등 미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 협의, ▲20년 기한 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따르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은 한미투자공사에 설치하고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해 연 200억달러 한도 대미투자과 조선험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한다. 또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와 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 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관련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하고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을 포함한 내용을 미국의 연방관보에 조속히 게재해 줄것을 요청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 인하도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하구현 기자 |

“AEO 기업 CP 신청시 유사항목은 심사 면제” 달라지는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

산업통상부는 11월 26일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 관세청에서 AEO(수출입관리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기업이 산업부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기업) 자격 취득을 신청할 경우, 출하·문서·보안관리 등 양 인증제도 간 중복되는 평가항목은 심사를 면제한다.

또 개별수출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도 예상치 않은 사유로 1년의 유효기간 내에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합리성을 높인 것이다. 무역안보관리원에 따르면 미국은 유효기간 4년 이내에 연장요청 서류를 제출하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수출허가 등 면제 사유에 해당돼 허가 없이 수출한 뒤, 기한 내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

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는 등 정상참작이 인정되면 과도한 과태료 처분(1,000만원 이하)을 피할 수 있도록 '사후 자진신고' 규정이 도입된다. 허가면제를 받아 수출 후 3개월 내 거래보고를 완료하되 예외적으로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사후 자진신고가 허용된다.

아울러 전략물자 최종사용자를 수출거래 건별로 확인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대리점(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무역안보관리원 오정미 선임연구원은 “개인용 거래, 스포츠·레저용 거래, 수리 목적의 본사·자회사 거래 등은 중간대리점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해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전했다.

● 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 ① 자율준수 : AEO 공인기업이 CP 기업 신청시 심사 간소화
- ② 수출허가 :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설
- ③ 수출허가 : 거래 특성상 최종사용자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간대리점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 신설
- ④ 사후관리 : 허가면제 거래보고 미제출에 따른 자진신고제 신설
- ⑤ 국제정세 :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금지

출처 : 무역안보관리원

국제사회 무역안보 규범 이행도 강화된다. 7대 무기류를 포함한 일부 재래식무기품목과 핵·미사일 관련 통제품목의 대이란 수출금지 조치를 복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가오는 연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의견은 12월 16일까지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정부, K-뷰티 종합 수출 전략 가동 “수출전략 다각화 및 해외 인프라 확대”

K-뷰티 수출 확대를 위해 창작자·소상공인 지원, 해외 거점 확충, 소비재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11월 27일 발표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뷰티 브랜드 창작자 300개사를 발굴하고, 2026년까지 소상공인 500개 팀을 선발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연계·지원해 수출 준비부터 현지 진출까지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온라인에서 시장성을 검증받은 기업이 오프라인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를 도입해 컨설팅, 마케팅, 해외 현지화도 일괄 제공한다.

K-콘텐츠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현지 국가 기념일 등 주요 행사를 활용해 K-뷰티의 홍보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거점별 수출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K-뷰티 클러스터 시범사

업을 통해 전시·체험 중심의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8개 내외 지역으로 확대한다.

● 글로벌 화장품 수출국가 3위 &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 ●

순위	1	2	3	4	비고
국가					'24년 기준
실적	233억 \$	112억 \$	102억 \$	91억 \$	

순위	1	2	3	4	5	비고
국가						'24년 기준
실적	18억 \$	13억 \$	10억 \$	9억 \$	7억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뷰티·헬스케어 제품에 AI 협력 고도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스타트업의 AI 기술을 결합해 제품 차별화 및 고도화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내년 5개 내외 AI 협업 과제를 시범 지원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400억원 규모의 K-뷰티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로드쇼, K-뷰티론·보증 등 금융지원 및 제조 스마트화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해외 인프라와 생태계도 탄탄히 다질 방침이다. 내년 'K-뷰티 진출 거점 재외공관' 4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2027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토대로 현지 시장정보, 인증 획득, 판촉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팝업부스, 미국과 EU에 대형 화장품 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주력 플래그십 스토어를 확대한다.

패션·라이프·푸드 등 소비재 4개 분야 수출유망 제품을 2030년까지 500개 발굴해 민관 공동 해외 마케팅을 진행한다. 브랜드 위조·도용 방지를 위한 위조상품 모니터링과 분쟁대응 전략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비처방의약품(OTC, Over The Counter) 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자외선 차단제 등 관련 기업의 FDA 제조소 등록을 지원한다. 국가별 규제·시장정보를 AI 기반으로 통합 제공하는 맞춤형 규제정보 시스템을 늘린다.

한편, 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진흥 및 육성법' 제정을 추진해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제와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중기부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은 초국가 무역범죄” 단속 총력

관세청은 11월 27일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국내 반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과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 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계 등이 해외에서 불법 반입될 경우 산업재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국경에서 이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수와 부정수입 행위 적발 건수는 총 4,261건으로 금액으로는 1조 6,835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민과 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 반입한 사례들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건설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가 중점 단속된다.

그간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와 부정수입 등으로 관세청에 적발된 유형도 다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183매를 중국과 베트남에서 위조해 특송화물을 통해 들여오다 적발됐으며,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약식 타정총의 경우 중국 등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오며 X-ray 판독검사와 「총포 화약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불법 반입된 6,195정이 적발되기도 했다.

수입요건을 회피하거나 미구비한 부정수입도 적발됐다. 일본에서 산업용 프레스 기계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 기계장비로 위장해 383대를 밀수한 업체가 적발됐으며, 중국에서 산업용 파쇄기 및 컨베이어벨트 50대를 수입하면서 수입요건인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업체가 적발됐다.

이외에 중국산 소방용 랜턴 7,304점과 중국산 화학물질 보호복 등 90만점을 수입해 한국산으로 둔갑 후 공공기관에 부정 납품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앞으로 산업안전 위해물품 국내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산업안전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수입요건 회피 행위를 집중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통관심사도 강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구현 기자 |

박주현의
워싱턴
통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며 다시금 ‘America First’를 외치고 있다.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은 국제 경제와 통상 질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현재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로펌 DLA Piper LLP에서 파견 근무 중인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 파트너 변호사가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기조와 정책 방향을 연재 형식으로 전하고자 한다.

“염전만 문제 아니다” ‘미 강제노동 금지’ 제조업 전반에 영향

대미 수출 기업들의 위기관리 전략 : 강제노동 활용금지 규범을 중심으로



박 주 현 |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
DLA Piper LLP(US), Washington DC Office 파트너 변호사

2025년 11월 13일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Jobs to Move America(이하 ‘JMA’)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와 이 두 회사의 협력 회사들(이하 총칭해 ‘현대 및 기아차’))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JMA는 이 사건 소장에서 현대 및 기아차가 자동차 생산에 있어 캘리포니아 주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들의 이러한 생산 방식이 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한 다는 선언적 판결(a declaratory judgment)과 독립적인 감사(independent audits), 모니터링 (monitoring), 준법 컴플라이언스 인증(compliance verification)을 요구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 (a permanent injunction)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원고인 JMA의 핵심 주장은 “현대 및 기아차가 그들의 협력업체들이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자행하는 노동 착취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위법행위를 막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JMA는 “이와 같은 현대 및 기아차의 행위는 강제에 의한

1) 피소된 기업은 현대자동차 아메리카(Hyundai Motor America, Inc.),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 기아 아메리카(Kia America, Inc.), 기아자동차(Kia Corporation), 현대모비스(Hyundai Mobis Co. Ltd.), 글로비스 아메리카(Glovis America, LLC)다.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고 캘리포니아주의 공공조달 계약에 입찰하면서 위와 같은 법률 위반이 없다고 인증한 것이 허위인 것이 되며, 이는 곧 현대 및 기아차가 그들의 협력업체의 불법적 노동착취에 가담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JMA는 현대 및 기아차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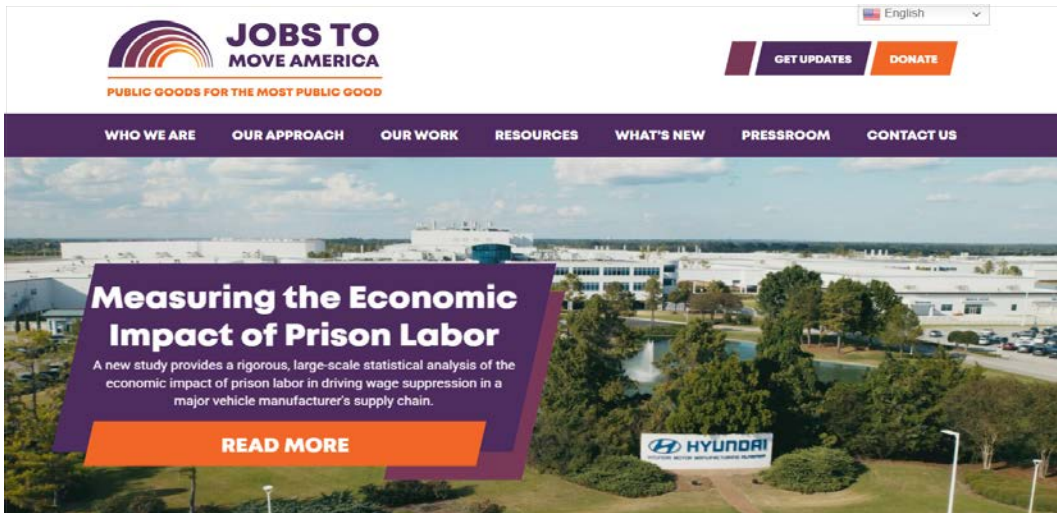


사진 : JMA 홈페이지 캡처

특히 JMA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대 및 기아차는 캘리포니아주에 공공조달 계약을 통해 자동차를 납품하고 있는바, 이는 캘리포니아주 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에 위반되며, 이와 같이 미국의 공공 가치를 위반하면서 공공 자금의 혜택을 받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²⁾

이번 호에서는 이 사건 소의 핵심 쟁점과 원고 측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 및 대미 수출기업의 사업 수행 관련 위기관리 전략을 검토한다.

1. 이 사건 소의 핵심 쟁점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주의 노동 정책, 공공조달 기준,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위배되는 기업의 행위 권한 남용과 기만 행위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관련해 캘리포니아의 ‘고도 노동 기준(high-road labor standards)’은 노동 착취적 작업, 강제노동, 교도소 노동, 또는 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공적 자금으로 구매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한다.

2) Jobs to Move America, “Jobs to Move America Files Lawsuit Against Hyundai and Kia for Using Prison and Child Labor in U.S. Supply Chain”, November 13, 2025(<https://jobstomoveamerica.org/press-release/jobs-to-move-america-files-lawsuit-against-hyundai-and-kia-for-using-prison-and-child-labor-in-u-s-supply-chain>)

아울러 캘리포니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노동 정책 및 공공조달 기준을 준수했음(달리 말하면, 강제노동 등 위법적인 노동 착취행위가 없었음)을 인증함으로써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 원고(JMA) 측 주장 및 근거³⁾

이 사건 소에서 JMA는 “현대 및 기아차는 공공 조달 계약에 입찰함에 있어 캘리포니아주의 관계 법령 등을 준수했다고 인증⁴⁾한 바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현대 및 기아차는 캘리포니아 공공기관과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고 같은 법령(아래 표 참고)을 준수하는 동종의 타 기업에 비해 입찰 경쟁에 있어 부당하게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주에 공급하는 조달업체에 다음과 같은 행동 강령(Sweatfree Code of Conduct)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계약업체와 하청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직원도 해고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직원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서 규제하지 않는 특정 직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 또는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계약업체와 하청업체는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를 대신해 노동이 수행되는 관할권의 관련 지역, 주 및 국가 법률을 준수해 근로자에게 최소 임금 및 복리후생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시설이 위치한 국가의 아동노동 가능 법적 연령 또는 의무 교육 이수 연령(있는 경우) 중 더 높은 연령보다 어린 사람은 고용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아동은 제조 공정에 고용될 수 없다”

넷째 “노예 노동, 교도소 노동, 계약 노동 또는 담보 노동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되지 않으며, 강제 초과 근무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근무 환경은 안전하고 건강해야 하며, 최소한 관련 지역, 주 및 국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JMA는 현대 및 기아차는 강제노동에 대한 목인 및 방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홍보하며 캘리포니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현대 및 기아차가 캘리포니아주 법률 및 가치관에 위반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노동 관행(강제 교도소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에 의한 강제이주노동, 아동노동 사용 등)에 연루된 남부 지역의 공급망(Southern supply chain)에 의존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JMA는 현대 및 기아차가 공급업체의 운영 방식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고 따라서 공급업체의 불법적인 노동착취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3) 소장을 기준으로 요약 및 정리했으며 원문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jobstomoveamerica.org/wp-content/uploads/2025/11/Complaint-for-Declaratory-and-Injunctive-Relief.11-13-25.pdf>).

4) 캘리포니아 공공계약법 제6108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공공기관 소비자에게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차량을 포함해 주 기관에 차량을 제공하는 모든 계약자는 계약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공급된 차량 중 어느 것도 착취 노동, 강제노동, 죄수 노동, 형사 제재 하의 계약 노동, 학대적 형태의 아동노동 또는 착취 노동에 의한 아동 착취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가 생산되지 않았음 또는 착취 노동, 강제노동, 죄수 노동, 형사 제재 하의 계약 노동, 학대적 형태의 아동노동 또는 착취 노동에 의한 아동 착취의 이익을 위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증거로 최근 발표된 ‘현대차 공급망 내 수감 노동의 영향(The Impact of Incarcerated Labor in Hyundai's Supply Chain)’이라는 학계의 논문을 근거로 든다. 이 논문에 따르면, 앨라배마주의 현대차 공급망 내에서 억압적인 수감 노동이 자행되고 있고, 기업이 이러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직원들의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현대 및 기아차의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평균 임금은 다른 지역의 유사한 일자리에 비해 7~9% 정도 더 낮고 현대 및 기아차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⁵⁾

나아가 JMA는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남부지역의 공급업체는 안전하지 못한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법규 위반, 작업자 부상, 예방 가능한 사망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게 강제노동 이슈 이외에도 노동 환경과 관련해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성명서를 통해 JMA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우리는 안전과 복지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미합중국 연방과 개별 주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우리는 우리의 공급업체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현대차의 엄격한 안전, 고용 및 법적 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위반이 발생할 경우 결정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⁶⁾

3. 시사점

JMA의 소는 일단 미국 연방 및 주의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해 미국 내 제조업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JMA는 강제노동 금지와 관련해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연방 및 주 정부로 하여금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집행 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 피소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소송 대응 및 후속 정부 조치 대응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협력사의 공급망까지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진출 기업 또는 대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유사한 유형의 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협력업체에 연방 및 소속 관할 주의 노동 관련 규제 표준을 숙지할 것을 요구하고, 협력사 본인은 물론 그의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엄격한 표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둘째, 협력업체에 잠재적인 노동법 위반 이슈를 식별하고 즉각 조치하기 위한 사내 교육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협력업체가 노동 관행에 대한 정기 감사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을 것을 요청하고 결과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5) Columbia Labor Lab, The Impact of Incarcerated Labor in Hyundai's U.S. Supply Chain, November 6, 2025(https://laborlabcu.org/wp-content/uploads/2025/11/CLL_IncarceratedLabor.pdf)

6) Los Angeles Times, Kia, Hyundai officials deny labor abuse allegations in lawsuit, November 17 2025(<https://www.latimes.com/socal/daily-pilot/news/story/2025-11-17/kia-hyundai-officials-deny-labor-abuse-allegations-in-lawsuit>)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전자액자의 HS Code

사진이나 영상 재생 기능이 있는 전자액자의 HS code를 알려주세요.

문의하신 물품의 주요 기능이 사진, 영상 재생인 경우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기타’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8521.90-9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 품목분류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결정세번	제8521.90-9000호
품명	10.1 Hotblast Topper 전자액자 ; PR.CHNA
물품 설명	50×24×19.5cm 크기의 전자액자(10.1" AUO LCD module)와 아크릴을 거치대 형태로 결합시킨 물품으로 on/off 버튼 및 각종 조작버튼, USB커넥터, 헤드폰연결단자, 어댑터 및 스피커 등이 소매용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전자액자에 SD CARD를 삽입한 후 전자렌지 판매용 광고 동영상을 재생하는 기기
분류 사유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음성포함)을 기록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호 해설서 ‘(A) 기록기와 기록기/재생기를 결합한 것’ 그룹에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영상과 음성을 내는 디지털 코드를 (일반적으로) 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기기를 포함한다(예 :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SD CARD를 재생하는 기능이 주요 기능인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3호, 제852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21.90-9000호에 분류함.

수출 / 외국물품 수리 후 수출신고

해외로부터 부품 수리를 의뢰받아 해당 부품을 수리 후 수출할 예정입니다. 물품대금을 제외한 수리비 관련 대금만 받을 경우 수출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 검사(가공 제외) 등을 행한 후 다시 반출하는 경우(선·기 제외) 수출신고 시에는 거래구분 '84', 우리나라에서 수출됐던 물품이 수리, 검사 또는 클레임, 기타 사유로 반입돼 국내에서 수리, 검사 또는 보수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하자보수)의 경우 수출신고 시에는 거래구분 '89'가 되며, 결제방법은 유환(수리비 발생), 무환 가능합니다.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리비는 'Repair charge'로 단가와 분리해 기재합니다.

이러한 거래구분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의 거래구분 및 수입신고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환급 / 환급 청구기간

제척기간이 도래한 경정청구도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환급요건) 및 제72조(환급신청기한) 규정을 살펴보면 환급 청구권은 경정결정일로부터 5년간 행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환급요건)

법 제46조에 따른 과오납환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
2. 신고인 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
3.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4. 법 제4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5. 신고납부한 수입신고건의 신고취하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6. 납부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 건이 각하된 경우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72조(환급신청기한)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1. 제71조 제1호 및 제3호 해당세액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2. 제71조 제2호 해당 세액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납부일
3. 제71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신고취하일 또는 각하일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 및 관세의 과세단위 - 대법원 2022두63805(2023.3.8.) 대상판결 -

최 천 식 |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I. 머리말

최근 대법원의 대상판결은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세의 과세단위 및 세액의 취소범위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 대상판결은 세 가지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관계를 다루고 있다.

첫째 노(爐, furnace)의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쟁점으로, 원고가 수입한 물품이 한·EU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노(爐)의 부분품(HS 제8417.90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특제된 부품 세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둘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이 쟁점으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에 따라 내린 후속처분의 법적 성격과 법원이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의 적법성을 심리할 수 있는 범위와 기속력에 관한 절차적 문제다. 셋째 관세의 과세단위와 세액의 취소범위가 쟁점으로, 다수 물품을 하나의 수입신고서로 일괄 신고했을 경우, 관세의 과세단위를 수입신고 건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수입물품별로 볼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 중 일부에 위법이 있을 때 취소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체법적 문제다.

대상판결은 단순히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율 적용 문제를 넘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 행정소송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와 과세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세행정 및 납세자 권리구제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호에서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대상판결의 판단 요지 및 그 법리적 함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처분 개요

원고는 제철 생산·판매업자로서 충남 당진 제2냉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2011.6.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보세건설장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후 2012.9.1.부터 2013.1.29.까지 총 13회에 걸쳐 벨기에 소재 수출자로부터 아연도금라인 및 냉연도금복합라인의 공장설비에 사용되는 물품들(이 사건 물품)을 분할해 수입했다. 원고는 2012.11.7. 이 사건 물품 중 아연도금라인용 열교환기 및 냉연도금 복합라인용 열교환기에 대해 HS 제8419.50호에 분류해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고 한·EU FTA 협정관세율 4%를 적용해 사용전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를 납부했다. 원고는 2013. 2. 이 사건 물품 중 이 열교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 전부를 노(爐, furnace)의 부분품 세번인 제8419.90호에 분류해 한·EU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해 사용전 수입신고를 했으나 세관장으로부터 물품 전부를 노(爐)의 부분품으로 인정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고 각 개별 부품으로 품목분류해 품목별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받게 되자, 2013.3.28. 노(爐)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해 일반관세율 8%를 적용해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를 납부했다.

원고는 2013.10.28. 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들은 모두 노(爐)의 부분품인 HS 제8417.90호에 해당하고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각 수입신고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감액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세관장은 2013.12.26. “열교환기는 특계세번(HSK 제8419.50-9000호)에 해당하여 다른 세번으로 정정할 수 없으며 노의 교환기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경우 노의 부분품(HSK 제8417.90-0000호)으로 일괄 수입신고되어 있는 상태로서 HS 통칙 제1호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상태로 각각의 물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함”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경정청구 기각처분에 불복해 2014.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14.11.7. “세관장이 2013.12.26.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거래내용, 품목분류 및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세관장은 2015.4.7. 원고에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통지해 종전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III. 원고 주장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HS 협약)」는 「관세법」의 관세율표에 수용돼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충돌되는 경우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으로 수용된 HS 협약과 한·EU 자유무역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이 우선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전체가 노(爐)의 부분품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가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해서는 HS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와 관계없이 노(爐)의 부분품에 대한 한·EU FTA의 협정관세율 0%가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첫 번째 주장).

2) 설령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세법」과 HS 협약에 따라 품목분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들은 모두 노(爐)의 부분품(HSK 제8419.90호)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고, 한·EU FTA에 따른 요건을 구비한 경우 노의 부분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관세율 0%가 적용돼야 한다. 그럼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두 번째 주장).

3) 세관장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실질적으로 인용한 이 사건 재조사 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했는데 이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위법하다(세 번째 주장).

IV. 대법원 판결 내용(2022두63805, 2023.3.8.)

1. 인정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충남 당진 제2냉연공장의 아연도금라인과 냉연도금복합라인은 자동차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을 생산하기 위해 철판에 열처리, 도금 등 가공을 해 보다 얇고 연한 재질의 냉연강판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위 공정이 이뤄지는 시설은 공정순서에 따라 예열대, 가열대, 냉각대, 냉각타워, 과시효대, 최종 냉각대 등의 구간으로 나뉘었는데 각 구간에서 이뤄지는 구체적인 공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예열대 : 철판(strip)에 열을 가하기 전 갑작스런 고열 처리로 인해 형상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예열하는 단계로, 연료소모를 줄이기 위해 가열대에서 사용한 폐열, 폐가스를 열교환기를 이용해 열을 공급한다.

② 가열대 : 예열대에서 넘어온 철판에 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해 연질 상태로 만들어 원료(Full Hard)보다 얇은 냉연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함. 열을 공급하기 위한 연료로 COG가스(석탄 건류가스)를 이용하고 공기와 혼합된 형태로 버너(Burner)에 유입된다. 버너에서 생성된 열은 철판에 바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판의 손상을 보다 최소화하기 위해 Radiant Tube를 이용해 튜브 내부 물을 가열시켜 철판에 열을 전달한다. 가열로(Furnace) 내부는 높은 온도일 뿐 아니라 가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열손실을 줄이고 밀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열로 내부는 단열재를 설치해 가열로의 열 손실을 막고 있다.

③ 냉각대 : 가열된 철판을 식히기 위해 냉각대를 지나게 된다. 냉각도 처음 열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Slow Cooling과 Rapid Cooling으로 나뉘게 된다. Slow Cooling은 예열대와 비슷한 역할로 급격히 냉각돼 철판이 변형되는 걸 막는다. 이후, Rapid Cooling에서 냉각가스를 분사해 냉각시킨다. 냉각된 철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Low Temperature Holding

구간을 통해 온도를 유지한다(냉각 온도는 400℃ 전후).

④ 냉각타워 : Rapid Cooling을 통과한 철판은 아연도금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연 욕조에서의 온도가 400℃ 이상이기 때문에 냉각대에서 유지되는 온도가 400℃가량이 된다. 아연도금을 한 후 냉각타워를 통해 일부 냉각과정이 진행된다.

⑤ 과시효대 : 이후 철판의 최고 강도나 경도가 되는 온도와 시간보다도 고온으로 장시간 시효해 기계적 성질과 응력 부식 균열성을 조장하게 된다.

⑥ 최종 냉각대 : 마지막 냉각작용을 실시하게 된다.

원고는 2011.10. 해외수출자와 이 사건 물품 전부에 관해 1건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부분 조립하지 않는 상태로 수차례에 걸쳐 분할 선적해 수입하고 원고의 보세건설장에서 이 수입물품 및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부품 등을 사용해 이 사건 공정설비 전체를 완성했다. 이 사건 공정설비를 구성하는 전체 부품 중 약 88%(금액 기준)는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12%가 수입한 이 사건 물품들이다. 이 사건 공정설비 중 가열대 구간에서 사용되는 자동점화장치, 냉각대 구간에서 사용되는 냉각용 공기주입장치 등을 구성하는 각 부품들은 모두 이 사건 물품들 중 일부이고, 가열대 구간에서 사용되는 연소장치, 냉각대 구간에서 사용되는 가스혼합장치, 모든 구간에서 사용되는 열순환장치 등을 구성하는 부품들은 이 사건 물품들 일부 및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부품 등이 섞여 있다.

2. 판결 요지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나라는 HS 협약을 「관세법」 등 국내법령으로 수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HS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율은 HS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와 관계없이 한·EU FTA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TA관세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하는 경우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EU 자유무역협정문 제2.4조는 “양 당사자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HS 협약에 합치되게 해석된 각 당사자의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규정된 분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한·EU FTA가 HS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결국 한·EU FTA는 HS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를 전제로 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세율 및 원산지증명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것일뿐 HS 협약이 규정한 품목분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한·EU FTA 및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의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물품을 HS 협약에 따라 품목분류한 후 그와 같이 분류된 품목번호별로 한·EU FTA가 규정한 관세율 적용요건이 구비된 경우 비로소 이를 「관세법」의 관세율표가 규정한 관세율보다 우선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노(爐)의 부분품(품목번호 제8417.90호)’으로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율표에는 관세율이 8%로 규정돼 있지만, 한·EU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율인 0%가 적용된다. 이 사건 물품의 수출자는 이 사건 물품들 전부가 ‘노(爐)의 부분품(Parts for Furnace)’임을 전제로 이 사건 물품들의 원산지가 벨기에라는 취지의 문구를 송품장에 기재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들이 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된다면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들이 원고 주장대로 ‘노(爐)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해야 하고, 「관세법」 제50조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하는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물품들은 ‘노(爐)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물품들 중 열교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해 수입신고하면서 원고 스스로 품목분류한 분류표를 첨부해 제출했고,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도 관세법인을 통해 이메일로 피고 직원에게 이 사건 물품들 중 열교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한 품목분류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세관장은 원고가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각 품목분류표를 바탕으로 이 사건 물품들 중 열교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해 별지 기재와 같이 개별 부품별 품목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위 품목분류는 이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품목분류표의 내용과 일치하고, 달리 위 품목분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위 각 품목분류표에 대해 피고가 노의 부분품이 아닌 각 물품별로 품목분류할 것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품목분류가 적절치 않다고 여길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의 이러한 품목분류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이 품목분류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들 중 ‘노(爐)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되는 물품은 없다.

② HS 해설서에 의하면, 제8417호로 분류된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에 관해 "비전기식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노(爐 : furnaces)와 오븐을 분류하며 이들은 연료의 연소에 의한 노(爐) 실내에서의 고열발생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으로서 화상(火床)·도가니·레토르트나 선반 위에 놓이는 여러 가지 물품의 열처리에 사용한다"고 설명돼 있다. 이에 따르면, 노(爐)란 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열을 사용해 여러 가지 물품을 열처리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설비 중 'COG가스를 버너로 연소하여 생성한 열을 튜브를 이용하여 철판에 전달하는' 가열로만이 제8417호에서 정한 '노(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물품들 중 일부만이 가열대 구간의 가열로를 구성하는 데 사용됐고, 나머지(열교환기 포함)는 이 가열로와는 무관한 냉각, 도금 등을 위한 설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됐으므로, 이와 같이 가열로와는 무관한 설비에 사용된 물품들은 '노(爐)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여지가 없다(다만, 이 사건 물품들 중 가열로를 구성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구분되거나 특정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물품들 중 이 사건 공정설비의 가열로와 관련된 부분(이하 '가열로 관련 물품들'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HS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열로 관련 물품들은 조립했을 경우 노(爐) 전체를 완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경우에 해당하나, 위 물품들만이 제시된 상태에서는 완전 또는 완성된 노(爐)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물품들을 노(爐)로 봐 품목번호 제8417호에 분류할 수는 없다.

가열로 관련 물품들을 '노(爐)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있는지는 노(爐) 등 기계류와 전기기기 등이 속한 관세율표 제16부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이 속한 제84류의 각 주(註)의 부분품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HS 해설서는 제84류의 부분품에 관해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HS 해설서는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을 작동하도

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세율표 규정과 HS 해설서의 각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물품들은 대부분 제16부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호에 해당하거나 제16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해 ‘노(爐)의 부분품’에 품목분류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에 관해서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들 중 가열로 관련 물품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물품들이 ‘노(爐)의 부분품’에 품목분류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물품들 중 일부로만 구성된 장비 중 가열로와 관련된 ‘자동점화장치(Automatic Ignition)’에 관해 보면, 원고는 위 자동점화장치에 관해 ‘연소가스를 버너에서 연소시켜 연소열을 강판으로 전달해 가열하는 과정에서 연소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약 400개의 버너(Burner)와 버너를 조절하는 BCU(Burner Control Unit) 등으로 구성돼 있는 장치’라면서 가열로의 주목적인 소재의 가열을 위한 핵심적인 물품이므로 ‘노(爐)의 부분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6부 주 제2호 및 HS 해설서에 의하면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이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을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했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되는바, 이 자동점화장치 중 버너 부분은 HS 제8416호의 ‘액체연료·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에 분류되고, 제어장치 부분은 HS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그 밖의 기반’이나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원고가 작성한 품목분류표에도 자동점화장치 구성 부품들이 제8537호 등으로 분류됐다), 제16부 주 제2호에 의해 ‘노(爐)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춰, 원고가 이 사건 물품들 전부에 관해 수출자와 사이에 1건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이 사건 물품들이 모두 이 사건 공정설비 건설에 사용됐고 이 사건 공정설비의 필수 부품이라는 등의 사정은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물품들을 품목분류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품들이 ‘노(爐)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돼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은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하여 거래내용, 품목분류 및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 사건 물품들 중 수입신고된 ‘노(爐)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을 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가 이 사건 물품들이 이 사건 공정설비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이 사건 경정청구를 인용하라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과세가격 결정의 적법 여부

① 대전고등법원 판결요지 2016누12316, 2017.6.22.¹⁾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하여 각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원고가 「관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법한지는 결국 품목분류가 적정한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품목분류표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한 품목분류는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물품들 중 열교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해서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에 의한 품목분류를 따를 경우 기본세율이 0%(무세)인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일부 존재하는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가 정당한 세액보다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무세인 품목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관세는 일정 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물품의 수입신고별로 과세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개의 수입신고건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별로 정당한 세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무세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포함된 2개의 수입신고 건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취소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1)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는바, 이해를 돕기 위해 원심의 판결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과세금액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물품 전체에 관하여 1건의 단일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물품들 중 기본세율이 0%(무세)인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의 수입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무세물품 포함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무세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가격 분할한 자료가 있긴 하나, 여전히 가격을 알 수 없는 물품이 동일한 수입신고 건에 포함된 이상 해당 수입신고 건의 정당한 세액은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무세물품을 포함한 수입신고 건에 관한 부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는바, 무세물품을 포함한 수입신고 건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은 114,445,850원(수입신고서 K 84,853,090원 + 수입신고서 R 29,592,760원)이므로, 결국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114,445,850원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② 대법원 2017두53767, 2022.4.14.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여러 건의 수입신고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수입신고 건별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기본세율이 0%인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포함된 2건의 수입신고에 관한 부분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관세의 과세단위 및 신고·납부 기준 등에 관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서에 포함된 각각의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고(「관세법」 제14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제15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제16조). 따라서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에 포함된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과세단위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한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하여야 하고(「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아울러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관세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관세법」 제38조 제1항),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이처럼 관세의 신고·납부는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관세법」 제38조의 3 제2항),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제1호),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제2호)’, ‘경정 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제3호)’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이와 같이 관세의 경정청구도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세관장은 원고가 이 사건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원고가 「관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일부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법한지 여부는 과세단위에 해당하는 각 수입물품별로 그에 대한 품목분류와 그에 따른 세율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품목분류표를 바탕으로 피고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한 품목분류는 타당하다. 그리고 세액산출표에 품목분류에 따라 이 사건 일부 물품 중 세액산출표상 수입신고번호 K 중 순번 10, 12, 36번 부분, 수입신고번호 R 중 순번 39, 40, 41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관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적법하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액산출표의 수입신고번호 K 중 순번 10, 12, 36번 부분, 수입신고번호 R 중 순번 39, 40, 41번 부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와 같은 물품들에 대하여도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세액산출표 기재에 따른 경우 위와 같은 물품들은 기본세율이 0%(무세)인 품목에 해당하게 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무세인 품목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정당한 세액보다 초과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무세인 품목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범위와 관련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다수의 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이 물품 전체에 대한 과세가격의 합계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 물품에 한하여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존재함에도 개별 물품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어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일부 처분에 대한 취소 범위는 원고가 이 사건 일부 물품들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 중에서 무세에 해당하는 세액산출표의 수입신고번호 K 중 순번 10, 12, 36번 부분, 수입신고번호 R 중 순번 39, 40, 41번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그러한 세액 산정의 전제로서 무세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관세법」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5조), 관세를 부과하는 세관장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세액산출표의 수입신고번호 K 중 순번 10, 12, 36번 물품 및 수입신고번호 R 중 순번 39, 40, 41번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개별 과세가격이 같은 순번에 해당하는 과세가격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의 정당한 과세가격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나머지 물품들에 대하여는 각 과세단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일부 물품들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과세가격을 알 수 있는 물품(수입신고번호 K 중 순번 10, 12, 36번을 제외한 물품, 수입신고번호 R 중 순번 39, 40, 41번을 제외한 물품)에 한하여 정당한 과세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일부 물품 중 위와 같이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과 과세가격의 산출이 가능한 무세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수입물품이 아닌 각 수입신고 건을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무세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포함된 2건의 수입신고에 관한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의 심판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²⁾

V. 검토 의견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가 ‘노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특해진 개별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둘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세관장의 처분범위를 어디까지 기속할 것인지 여부, 셋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세액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인 과세단위를 수입신고 건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입물품별로 볼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취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다.

1.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해 FTA와 HS 협약의 관계에서 한·EU FTA는 HS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를 전제로 특혜세율을 규정한 것일 뿐, HS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품목분류는 HS 협약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전제로 해 이 사건 물품들은 대부분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 및 HS 해설서에 따라 그 자체로 특정 호에 분류되는 개별 물품이거나 가열로와 무관한 냉각·도금 설비를 구성하는 데 사용됐으므로, ‘노(爐)의 부분품(HS 제8417.90호)’으로 품목분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특정기계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그 물품 자체가 관세율표상 특정 호에 별도로 분류되는 물품인 경우(예 : 버너, 제어장치 등)에는 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7.90호가 아닌 해당 개별 세번으로 분류돼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HS 협약의 통칙 제1호를 충실하게 해석한 것으로 품목분류 원칙상 타당하다고 본다.

2.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채택하는 ‘재조사 결정’은 행정심판법상 인정되는 심판결정의 한 형태로서 일반적인 인용(취소·변경) 결정이나 기각 결정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조사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절차적 또는 사실관계 확인상의 미흡함이 있다고 봐 청구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변형된 형태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에게 심판결정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등 적법한 처분을 다시 하라는 비구속적 주문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청을 기속해 반드시 재조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지만 재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적인 처분의 내용까지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즉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기존의 처분이

2) 대법원의 과세처분 취소범위 부분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대전고등법원(2022누10847, 2022.10.20.)을 거쳐 대법원(2022두63805, 2023.3.8.)에서 확정됐다.

적법했다고 판단되면 종전의 처분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시 거부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또한 재조사 결정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심리할 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그 후속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조사해 다시 내린 결정 거부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다. 즉, 행정소송 대상은 기존에 원고가 다투던 최초의 처분이 아니라, 이 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후속처분이 된다. 법원은 후속처분³⁾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후속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심리해 판단한다.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실무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자료 보완의 필요성

조세심판은 행정심판의 일종으로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심리하는 서면 심리가 원칙이다. 따라서 심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자료 부족이다.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심판청구서에 첨부되지 않는 경우다. 둘째,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다. 물품의 실제 기능, 사용 목적, 설치 현황 등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다. 셋째, 고도의 첨단기술이나 물리·화학구조 등 복잡한 전문분야에 대해 심판관이 서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경우에 직면한 경우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조세심판원과 처분청의 역할 분담 및 효율성 제고

조세심판원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심판기관으로서 직접 과세관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만일 처분청이 여러 물품에 대해 하나의 처분을 내렸는데 일부 물품만 위법한 경우 조세심판원이 위법한 부분만을 직접 분리해 정당세액 계산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조세심판원은 위법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조사해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고 적법하게 다시 처분하라고 주문함으로써 처분청의 전문 인력과 권한을 활용해 가장 정확하고 합리적인 처분이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다.

3) 납세자 권익구제 및 행정소송 회피

재조사 결정은 납세자가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행정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 이 사건의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경정거부처분이 된다.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해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고 세액을 경정해 주면 청구인은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이 새로운 처분을 내릴 때까지 기존 처분의 효력을 일단 유지시키면서 납세자의 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제공한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대해 다시 불복하고자 할 때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실질적으로 인용한 재조사 결정 이후에도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을 유지했는데 이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반드시 재조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지만 재조사 결과에 따른 세관장의 최종적인 처분의 내용까지 기속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을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과세단위 확정 및 세액의 취소범위

1) 과세단위 확정

대법원은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등에 관한 관세법령 규정을 종합할 때, 관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니라 수입신고서에 포함된 각각의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이 판례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 의의를 갖는 쟁점은 바로 관세의 과세단위(課稅單位)와 이에 따른 과세처분의 취소범위 문제다. 대법원은 원심이 '수입신고서 건별'로 과세단위를 판단한 것을 배척하고, 「관세법」이 지향하고 있는 '수입신고물품별' 과세단위의 기본원칙을 따랐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와 제15조(과세표준)를 근거로,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하나의 수입신고 건이 아니라 그 수입신고서에 포함된 개별적인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함을 명확히 선언했다. 그 법적 근거와 그 이유로 「관세법」은 '수입물품'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입신고, 납부, 경정청구 등 모든 절차가 '수입물품'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물품을 하나의 신고서로 일괄 신고했다하더라도, 법적으로 관세의 과세단위는 각각의 수입신고물품 그 자체이지, 관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서류단위(신고 건)가 될 수는 없다.

2) 세액의 취소범위

원심(2심)은 무세물품이 포함된 2건의 수입신고서에 대해 수입신고 건별로 정당세액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수입신고서 내의 개별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판단해야 하며, 세관장이 무세물품의 개별 과세가격을 증명하지 못해 정당세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물품(적법하게 과세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과세관청(피고)에게 있다. 위법한 과세가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세관청이 위법한 과세 부분(무세물품)의 고유가격을 입증하지 못해 정당세액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계산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과세는 취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심은 수입신고 건별로 정당세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하나의 수입신고 건에 무세물품(과세에 위법이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고 그 무세물품 자체의 고유가격을 알 수 없어 정당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위법성이 없고 고유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다른 물품까지 포함해 해당 수입신고 건 전체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법」상 과세물건(제14조), 과세표준(제15조), 신고·납부(제38조), 경정청구(제38조의3)의 모든 절차가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음을 근거로, 과세단위가 개별 수입물품임을 확인했다. 즉 적법하게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물품(대부분의 유세물품)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지하고, 과세가격을 알 수 없어 정당세액 산출이 불가능한 무세물품과 그 외의 과세가격 산출이 불가능한 나머지 물품에 대한 경정거부처분만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에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서 건별로 총액을 기재하도록 하더라도, 실제 관세 채무는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각각의 물품에 따라 발생한다는 실체법적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과세단위의 확립은 행정소송상 취소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원심이 ‘수입신고 건별’을 기준으로 정당세액 미산출 시 ‘전부 취소’의 법리를 적용해 불필요하게 취소 범위를 확대한 것을 바로잡고, 위법한 부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 구제와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VI. 맺는 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관세 행정소송에서 다투어진 세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법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이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품목분류 원칙의 확립이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한·EU FTA 등 특혜세율 규정의 취지와 무관하게 HS 협약에 따른 엄격한 분류원칙을 따라야 하며, 특정기계의 부분품 주장 시에는 ‘특계된 세번 분류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둘째 재조사 결정 법리의 명료화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의무만 기속할 뿐 재조사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과세단위 및 세액의 취소범위의 합리화다. 관세의 실체적 과세단위는 ‘수입신고 건별’이 아닌 ‘개별 수입물품’이며, 다수 물품에 대한 과세처분 중 일부만 위법하더라도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한 물품은 처분을 유지하고, 과세가격을 알 수 없어 정당세액 산출이 불가능한 물품에 한해서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함으로써, 납세자 구제와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동시에 제고했다.

이 판례는 향후 관세당국이 다수의 물품으로 구성된 단일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개별 물품별 과세근거를 더욱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점을 제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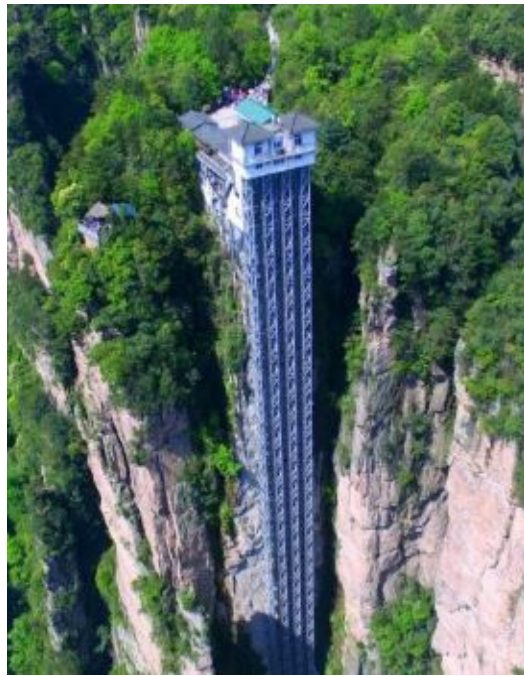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도어 개폐장치의 품목분류 -2025년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심 난 섭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I. 개요

엘리베이터(Elevator)는 현대 도시의 고밀도와 초고층화 현상의 건축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 중 하나다. 특히 아시아 지역(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초고층화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신규 수요 및 유지보수, 스마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 안전에 관한 부품의 기술 수준도 고도화되고 있다.

엘리베이터 해치도어 오퍼레이터(ELEVATOR HATCH DOOR OPERATOR)는 엘리베이터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구성요소이며, 엘리베이터에 대한 국제 표준에서도 해치도어 오퍼레이터(Hatch Door Operator)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들에 대해 여러 가지 규격을 정하고 있다.



ISO 국제표준(ISO 8100시리즈)의 도어 관련 규정 항목을 살펴보면 ① Power-operated doors(자동도어) : 문 구동장치는 안전한 속도, 가속도, 토크값, ② Door closing and opening requirements : 문 개폐시의 감속 구간 필수, 과도한 충격·진동 금지, 문 열림·닫힘의 이동범위 및 정지 위치 허용오차 규정, ③ Door coupling(카도어-층문 연결) : 기계적 결합, ④ Door Locking Devices(인터록), ⑤ Reopening Devices(Door protective device) : 센서에 의한 장애물 감지 등, ⑥ Emergency operations : 정전·고장 시 수동 개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유럽표준인 EN 81시리즈 등에서도 안전과 관련한 Door의 표준과 규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엘리베이터 도어(Elevator Door) 시스템은 단순한 기계적 개폐장치의 개념을 넘어 지능화, 정밀화 추세이며, **VVVF 인버터(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기반 정밀 제어, 광커튼 센서 등 안전기능 강화, IoT 기반 예측 유지보수, PM 모터 적용에 따른 소형화·저소음화, MRL(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전용 컴팩트 구조로 발전하고 있으며, 해치도어 오퍼레이터는 카상부에 설치돼 카도어와 층문을 동시에 개폐시키는 핵심 구동모듈로서 문 개폐 속도·토크·안전**

인터록과 상호작용하는 정밀 기계장치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초고층 건축물을 짓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호에서는 엘리베이터의 해치도어 오퍼레이터의 구성요소,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해치도어 오퍼레이터의 품목분류 쟁점 및 지난 11월 5일 개최된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살펴보면서, 기계·설비의 부분품과 고유의 기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II. 쟁점 사례

1. 쟁점물품 : 해치도어 오퍼레이터(HATCH DOOR OPERATOR)

1) 물품 개요

각 층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승강장 도어*를 개폐하기 위해 행거케이스, 행거플레이트, 인터록**, 인터록 SW*** (개폐감지 SW), 행거 Roller, 와이어 로프(Wire Rope), 풀리, 브라켓류 등으로 구성된 조립품.

* 엘리베이터는 승객이 탑승해 이동하는 '카'와 승객이 출입하는 '승강장 출입구'로 구성되며 카에는 카도어 오퍼레이터(Car door operator), 승강장에는 해치도어 오퍼레이터가 설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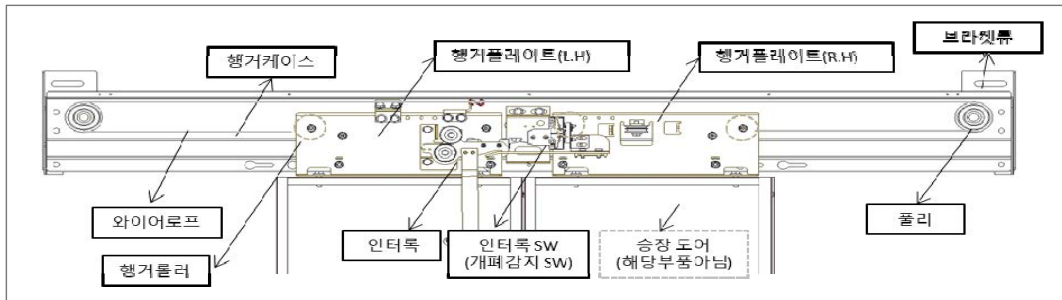
** 승강장 도어의 개폐 상태 감지 및 운행 통제(도어 열림 상태에서는 운행 불가)

*** 엘리베이터 제어반과 직접 연결돼 승강장 도어가 닫혔을 때만 해당 제어반으로 신호를 줘 엘리베이터가 정상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기능

엘리베이터의 문은 카도어 오퍼레이터와 해치도어 오퍼레이터가 서로 연동돼야만 열리는 구조로 이를 통해 카도어 및 출입구 도어가 운행 중 열리는 위험 상황 방지

● 쟁점물품 & 승강장 도어 개폐장치 주요 구성요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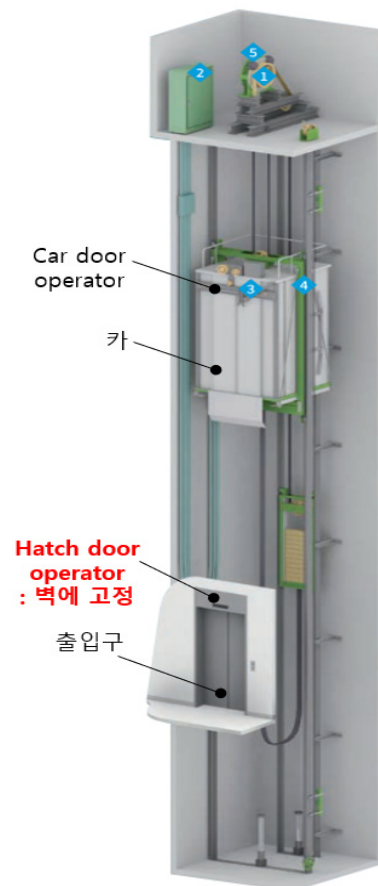


2) 작동 방식

엘리베이터 카도어는 승객이 탑승하는 카(Car 또는 Cage)에 달려있는 도어로, 카 상부에 달린 구동모터로 작동함. 구동모터의 회전 운동이 와이어 로프를 통해 직선운동으로 변환돼 도어가 열리고 닫힘.

* 엘리베이터는 '승강로 구조물'과 승객이 탑승해 이동하는 '카(car)', 승객이 출입하는 '출입구'로 구성되며, 하나의 승강로에는 1대의 '카'와 각 층마다 '출입구'가 있음.

카는 카도어 오퍼레이터, 락킹 디바이스(Locking Device), 카도어(Car door) 등으로 구성되며, 모터로 동작되며, 출입구는 해치도어 오퍼레이터, 인터록(Interlock), 해치도어 등으로 구성된다. 별도 전기적 동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동작 불가하며, 엘리베이터가 해당 층에 도착하면, 반드시 카의 락킹 디바이스와 출입구의 인터록이 서로 연동돼야 카도어, 해치도어의 개폐가 가능하고, 연동되지 않으면 카 및 출입구 잠금장치 작동으로 도어 개폐 불가함.



2. 쟁점사항

본 물품의 쟁점사항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 승강장 도어 안쪽 위에 설치되는 물품으로 본 물품을 **엘리베이터 (리프트) 부분품으로 봐 제8431.31-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승강장 도어를 열고 닫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봐 제8479.89-9099호에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 엘리베이터 구조 ●

3.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논의 사항

- 1) 갑론은 제8428호에 분류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봐 제8431.31-0000호에 분류한다는 논지다. 그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31.31호에는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에스컬레이터의 것’이 세분류됨.

엘리베이터 문은 카도어 오퍼레이터와 해치도어 오퍼레이터가 서로 연동돼야만 열리고 자체 내장 소프트웨어를 통해 운행을 일부 통제하므로, 본건 물품은 제8428호에 분류되는 엘리베이터(리프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에 해당함.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31-0000호에 분류함.

- 2) 을론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봐 제8479.89-9099호에 분류한다는 논지다.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 (c)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 사용 목적 또는 사용하는 산업, 범용성 등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의 각 층의 승강장 도어에 장착돼 엘리베이터 카도어와 연동해 승강장 도어를 열고 닫는 기능을 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제847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따라서, 본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4. 위원회 결정사항 : 제8431.31-0000호에 분류

III.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해설 및 시사점

그간 해치도어 오퍼레이터의 품목분류는 제8479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와 제8431.31-0000호 엘리베이터(리프트)의 부분품으로 사례가 나뉘어 있었다. 어떤 기계·설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나, 제시된 상태의 물품의 기능을 ‘고유의 기능’으로 판단해 어느 해당 호에 분류하느냐의 문제는 모듈(Module)이나 어셈블리(Assembly) 형태로 제시되는 대부분 물품에 해당한다.

먼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돼 있으므로,

우선 검토돼야 하는 것은 제8479호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다. 본 물품이 제8479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어떤 기계를 말하는지를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제8479호의 해설에서 고유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제8479호 해설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예 : 공기의 가습(humidification)이나 제습(dehumidification)은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독립하여 작용되는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인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하는 공기의 제습기는 오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한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i)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구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
예 : 체인 커터(chain cutter)는 공업용 재봉기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해당 재봉기가 끊임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실을 자동적으로 절단하는 장치이다. 이 체인커터는 해당 재봉기의 재봉이라는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행하기 때문에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며 ; 다른 열거된 호가 없으므로 체인커터는 이 호에 분류한다.

다른 한편 내연기관용 기화기(carburettor)의 기능은 엔진의 기능과 별개의 것이나 기화기(氣化器)의 작용은 엔진의 작용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의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제시된 기화기는 제8409호의 엔진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기계식이나 액압식의 완충기(shock absorbers)는 부착될 기계나 기기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제시된 완충기는 부착되어야 할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 (차량용이나 항공기용 완충기는 제17부에 해당한다).

해치도어 오퍼레이터는 카 상부에 설치돼 카도어와 층문을 동시에 개폐시키는 엘리베이터의 작동과 관련한 핵심 구동모듈로서 문 개폐 속도·토크·안전 인터록과 상호작용하는 정밀 기계장치다. 엘리베이터의 문은 카도어 오퍼레이터와 해치도어 오퍼레이터가 서로 연동돼야만 열리는 구조이며, 해치도어 오퍼레이터 자체의 동력은 없으며, 연동됐을 때만 카도어의 구동모터의 동력을 이용하는 구조로 돼 있어 자체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형태다.

따라서 본 물품은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B) (i)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 아니며,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구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479호의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에 따라 제8431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자.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엘리베이터는 제8428.10-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다. 엘리베이터 문은 카도어 오퍼레이터와 해치도어 오퍼레이터가 서로 연동돼야만 열리고 자체 내장 소프트웨어를 통해 운행을 일부 통제하며, 엘리베이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됐

으며, 안전과 관련한 Door의 표준과 규격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 물품은 제8428호에 분류되는 엘리베이터(리프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이므로 본 물품을 제8431.31-0000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본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서 시사하는 바는 ‘고유의 기능’의 해석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줬다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구동이 불가능하고, 내장 소프트웨어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스스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엘리베이터의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구동방식, 제어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8428호에 분류되는 엘리베이터(리프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에서 한 가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구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제8479호 해설서에서는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구동장치가 없어 구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고유의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으며, 제시되는 물품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토대로 품목분류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미래 자원 폐배터리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폐배터리는 재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지만 함부로 버리면 이산화망간, 흑연, 염화암모늄, 니켈,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지하수 수질을 오염시키고 땅을 황폐화하기도 한다.

방치된 폐배터리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 일명 ‘동전 전지’라고도 불리는 ‘수은 전지’에는 0.1~0.5g의 수은이 함유돼 있는데, 수은이 인체에 흡입·축적되면 수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수은 중독은 제때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어 건전지의 수은 함유량이 매우 적게 여겨져도 주의가 필요하다.

배터리 안 카드뮴은 ‘이타이이타이병(우리말로는 아프고 또 아픈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 병은 카드뮴에 의해 생기는 공해병으로, 뼈가 점점 물러지며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골절이 일어나는 고통을 겪게 되면서 중금속 공해물질로 교훈을 남기고 있다.

또한 폐배터리는 일반 쓰레기와 섞이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이 있는 배터리를 안전하게 분리배출하면 성분의 95%를 재활용해 아연, 마그네슘 등 유용한 금속 자원을 회수할 수 있는 소중한 재활용 자산이 된다.

환경부는 법령 개정으로 2008년부터 재활용 대상 품목에 추가된 배터리를 포함하고 지자체 조직은 수거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거 할당량을 과도하게 책정해 관련 공무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공무원들에 의한 수거작업과 함께 일반 주민들의 자발적인 폐배터리 수거 작업 동참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표에서 정상적인 배터리는 제8506호 ‘일차전지(Primary cells and primary batteries)’에, 2차 전지는 제8507호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에 각기 분류된다. 그러나 사용 후 폐배터리는 관세율표 제8549호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 <후략>’에 분류된다.

관세율표 제8549호는 2022년도에 새로 신설된 호(號 : heading)다.

2025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실무에 다각도로 활용하는 관세·무역 백과사전

- ☑ 최신 업데이트: 2025년 개정 HSK에 따른 FTA·WTO 세율 및 법령 개정분 수록 (한·필리핀 FTA 신규 추가)
- ☑ 정확성 강화: FTA·WTO 일부양허품목 세율체계 재정비로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 편의성 향상: 기본편 보기 요령 이미지 추가, 학명 표기 개선으로 이해도·가독성 제고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025 개정판 관세법령집

1

최신 기준 반영

- 관세/무역 관련 법령
- 2025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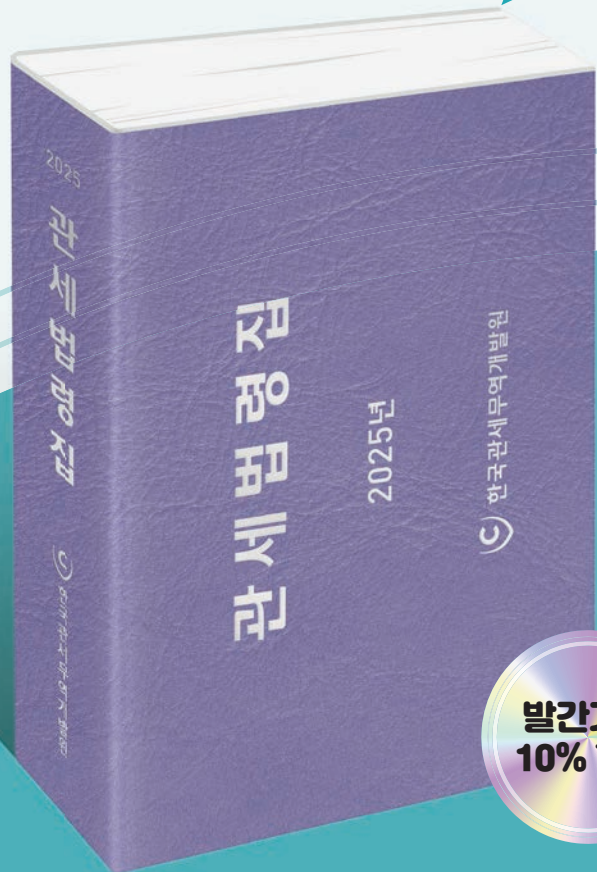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반영
- 고시 : 97개 → 82개
- 훈령 : 116개 → 92개
- 지시·지침 : 1,333개 → 501개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위임조문 3단비교 편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5,000원 → **58,500원**

2025년 6월 넷째주 발간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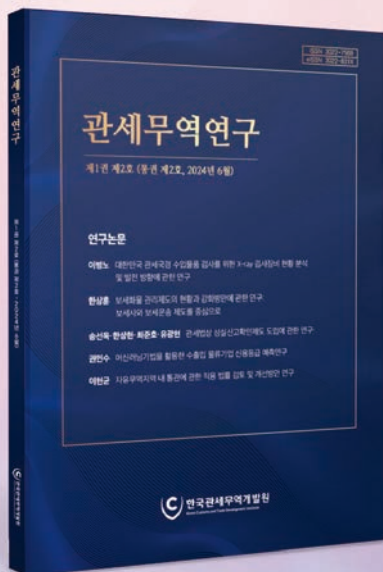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